

제3조(재정검증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재정검증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 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사업 연도에 관하여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31조제3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서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0월 29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이 재 갑**
장 관

●대통령령 제30177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제2조제2항제3호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같은 법 제8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5인”을 “5명”으로, “과건근로자를”을 “과건근로자는”으로 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있는 경우에”를 “있는 경우”로, “말한다)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6월로”를 “말한다)이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로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사업 내의”를 “사업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을 “업무 시작 및 종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휴일근무”를 “휴일근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차별적”을 “차별적”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의한”을 “따른”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별표 1의 16의 비고란 중 “업무를”을 “업무는”으로 하고, 같은 표의 181의 비고란 중 “업무를”을 “업무는”으로 하며, 같은 표의 235의 비고란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업무를”을 “업무는”으로 하고, 같은 표의 3222의 비고란 중 “당해”를 “해당”으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표의 421의 비고란 중 “숙박업”을 “숙박업에서”로, “업무를”을 “업무는”으로 하고, 같은 표의 91221의 비고란 중 “경비업무를”을 “경비업무는”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중전의 나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감경할”을 “줄일”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목 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부터 5)까지를 각각 1)부터 4)까지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허위의 신고를 한”을 “거짓으로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허위의 보고를 한”을 “거짓으로 보고한”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출 요구에”를 “제출요구를”로, “불응한”을 “따르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6조제5항제2호의2”를 “법 제46조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6조제5항제3호”를 “법 제46조제5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송부하지”를 “과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6조제5항제4호”를 “법 제46조제5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6조제5항제5호”를 “법 제46조제5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6조제5항제6호”를 “법 제46조제5항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과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0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

김현미

●대통령령 제3017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하 이 조에서 “물가상승률”이라 한다)의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를 “투기과열지구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전월(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적용한다.